|  |  |  |
| --- | --- | --- |
| **출입국자 휴대물품 검역 관리방법**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령[2012] 제146호  《출입국자 휴대물품 검역 관리방법》을 2012년 6월 27일 국가 품질 감독 검사검역총국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국장  2012년 8월 2일  **제1장 총 칙**  **제1조** 인간의 전염병 및 그 의학적 매체생물, 동물의 전염병, 기생충병 및 식물의 위험성 병충해, 잡초 및 기타 유해생물의 전입, 전출을 방지하여 인체건강과 농업, 임업, 어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및 그 실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및 그 실시세칙,《농업 유전자 변이생물 안전 관리법》,《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험 야생 동식물 수출입 관리조례》등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출입국자라 함은 국경 출입 객(외교특권, 영사특권이나 면허권을 향유하는 외교대표 포함)과 교통수단 담당직원과 기타인원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 휴대물품이라 함은 출입국자가 신변에 휴대하거나 그가 탑승한 차량,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 탁송하는 물품 또는 별도로 탁송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품질검사총국󰡓이라 함)에서 전국 출입국자의 휴대물 검역과 감독관리 활동을 주관한다.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각 지방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에서 그 관할지역의 출입국자 휴대물품의 검역과 감독관리 활동을 책임진다.  **제4조** 출입국자의 하기 물품은 신고하여 검사검역기구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1) 입국하는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검역이 필요한 기타물품  (2) 출입국 생물 물종자원, 멸종위험 야생 동식물 및 그 제품  (3) 출국하는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  (4) 출입국 미생물, 인체조직, 생물제품, 혈액 및 혈액제품 등 특수물품(이하 특수물품이라 함)  (5) 출입국 시체, 해골 등  (6) 출발지가 전염병 발생지역이고 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출입국자의 행리와 수행물품  (7) 국가품질검사총국의 규정에 따라 검사검역기구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는 기타 휴대물품.  **제5조** 출입국자의 하기 물품 휴대를 금지한다.  (1) 동식물 병원체(균종, 독종 등), 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2) 동식물 전염병 유행국가나 지역의 관련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검역이 필요한 기타물품  (3) 동물의 시체  (4) 토양  (5)《중화인민공화국 휴대입국, 우편입국 금지 동식물 및 그 제품 목록》에 들어 있는 물품  (6) 국가에서 입국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폐기물, 방사성 물질 및 입국을 금지하는 기타 물품.  **제6조** 검사검역기구의 검역에서 휴대물품에 중대한 위험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위험알람 및 응급대응 메커니즘을 시동해야 한다.  **제2장 검역 심사인가**  **제7조** 검역 심사인가 수속을 해야 하는 동식물, 동식물제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품질검사총국에 동식물 검역을 신고하여 심사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식물의 종자, 모종이나 기타 번식재료를 휴대하고 입국하면서 특수사정으로 검역 심사인가 수속을 하지 못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보완 신고해야 한다.  **제9조** 과학연구 등 특별한 수요로 이 방법 제5조의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품질검사총국에 동식물검역 특별허가 심사인가 수속을 신고해야 한다.  **제10조** 《중화인민공화국 휴대입국, 우편입국 금지 동식물 및 그 제품 목록》에 들어 있는 물품으로서 국가 관련 행정주관부서의 심사인가를 받았고 수출국가나 지역 관방기구에서 제시한 검역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하고 입국할 수 있다.  **제11조** 특수물품을 휴대하고 출,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직속 검사검역국에 신고하여 위생검역 심사인가 수속을 해야 한다.  **제3장 신고와 현지검역**  **제12조** 이 방법 제 4 조에서 나열한 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자는 반드시 관련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검사검역기구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검사검역기구에서는 교통수단, 출입국자 출입국 통로, 행리 수취 또는 수송 등 현장에서 출입국자가 휴대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현지검사에서 X광기기, 검역견 및 기타방식으로 검역할 수 있다.  출입국자가 이 방법에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물품을 휴대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신문하고 그 물품을 샘플링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짐을 개봉하여 검사할 수도 있다.  **제14조** 출입국자는 검사를 받는 동시에 검사검역 담당자의 검사에 협력해야 한다.  외교, 영사 특권이나 불가침권을 향유하는 외국의 기구나 인원이 공용으로 또는 자가용으로 들여오는 동식물, 동식물 제품이나 기타 검역물품은 반드시 검사검역기구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검역기구의 검역은 반드시 외교대표나 그 수권자의 입회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제15조** 신고하였거나 현지검사에서 발견된, 이 방법 제 4 조에서 규정한 각종 물품은 검사검역기구에서 반드시 현지검역을 해야 한다.  **제16조** 식물의 종자, 모종 및 기타 번식재료를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휴대 당사자가 검사검역기구에《도입 종자, 모종 검역 심사인가서》또는《도입 임목종자, 묘목 및 기타 재료의 검역 심사인가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조 제1항 이외의 기타 검역 심사인가수속을 해야 하는 동식물, 동식물 제품 또는 동식물 검역 특별인가를 받아야 하는 입국 금지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휴대당사자가 검사검역기구에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발급한《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증서》(이하 󰡒검역 허가증서󰡓라 함)와 기타 관련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에서는《도입 종자, 모종 검역 심사인가서》,《도입 임목 종자, 묘목 및 기타 재료의 검역 심사인가서》, 검역인가증서와 기타 관련 증빙의 요구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동식물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품에 대한 현지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제17조** 휴대하고 입국하는 생활동물은 개와 고양이(이하 󰡒애완동물󰡓이라 함)에 한하고 매인당 1마리로 한정한다.  애완물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휴대당사자가 검사검역기구에 수출국가나 지역의 관방 동물검역기구에서 제시한 유효 검역증서와 왁친 접종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애완동물은 전자 칩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제18조** 농업 유전자변이 생물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휴대당사자는 검사검역기구에《농업 유전자변이 생물 안전증명서》와 수출국가나 지역 관방기구에서 제시한 검역 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농업 유전자변이 생물 표식리스트에 들어 있는 입국 유전자변이 생물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표식을 해야 하며 휴대당사자는 국무원 농업 행정주관부서에서 제시한 농업 유전자변이 생물 표식 심사인정 인가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특수물품을 휴대하고 출, 입국하는 경우 휴대당사자는 검사검역기구에《입/출국 특수물품 심사인가서》를 제공하고 위생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식용 인체기관, 골수간세포를 휴대하고 출, 입국하면서 특수한 사정으로 위생검역 심사인가 수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출, 입국 시에 검사검역기구에서 우선 통관시키고 물주나 그 대리인은 통관 후 10일 근무일내에 위생검역 심사인가수속을 보완해야 한다.  자가용인 동시에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만 한하는 혈액제품이나 생물제품을 휴대하고 출, 입국하는 경우에는 위생검역 심사인가 수속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반드시 병원의 관련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휴대 허용량은 처방이나 설명서에서 규정한 1개 치료과정 용량에 한한다.  **제20조** 시체, 해골 등을 휴대하고 출, 입국하는 경우 휴대당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검사검역기구에 사망자의 사망증명서 및 기타 관련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에서는 법에 따라 시체, 해골 등에 대한 위생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제21조** 멸종위험 야생 동식물이나 그 제품을 휴대하고 출, 입국하거나 국가 중점보호 야생 동식물이나 그 제품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험 야생 동식물 출, 입국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출입국세관에서 통관해야 하며 휴대당사자는 검사검역기구에 출, 입국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22조** 검사검역기구에서는 휴대당사자가 제공한 검역허가증 및 기타 관련증빙을 확인하고 합격인 경우 현지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현지검역에 합격하고 실험실검역, 격리검역이나 기타 검역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통관시킬 수 있다.  휴대물품이 제공한 검역허가증이나 기타 관련증빙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한부 반품 또는 소각처리를 해야 한다.  **제23조** 휴대물품이 하기 상황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억류한다.  (1) 실험실검역이나 격리검역이 필요한 상황  (2) 검역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  (3) 기한부 반품이나 소각 처리해야 하는 상황  (4) 제공해야 하는 검역 인가증서나 기타 관련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  (5) 여타 관련부서에 이송해야 하는 상황.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억류한 휴대물품에 대한 억류증빙을 제시해야 하며 억류기간은 7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4조**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동식물, 동식물제품 또는 기타 검역물품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휴대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수입국이나 수입지역, 휴대당사자가 출국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품에 대한 검역을 요구하고 휴대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역하고 관련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제25조**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입국 중계인원의 휴대물품에 대한 검역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항공회사에서는 탑승한 입국 환승인원의 휴대물품을 별도로 처리하거나 갈라 탑재하고 입국 환승인원의 휴대물품 포장에 뚜렷한 표식을 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검사검역기구에서 국내노선의 수행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4장 검역 취급**  **제26조** 억류한 휴대물품은 검사검역기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봉인하거나 격리해야 한다.  **제27조** 실험실검역이나 격리검역을 해야 하는 휴대물품은 검사검역기구에서 억류하여 검역에 합격하면 휴대당사자가 억류증빙을 지참하고 규정기간 내에 수령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포기로 처리한다. 억류검역에 불합격이고 효과적인 처리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기한부 반품이나 소각으로 처리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않거나 출입국 당사자가 자동포기를 성명한 휴대물품은 검사검역기구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 입국 애완동물은 30일간(억류기간 포함) 격리검역을 해야 한다.  애완동물 출발지가 광견병 발생국이나 지역인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가 지정한 장소에서 30일간 격리검역을 해야 한다.  애완동물 출발지가 광견병 미 발생 국가나 지역인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7일간 격리하고 나머지 23일간은 검사검역기구에서 여타장소를 지정하여 격리한다.  휴대한 애완동물이 이를테면 장애인 안내 견이나 수색 견, 구조 견 등 작업 견인이고 휴대당사자가 관련 전문훈련증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격리검역을 면제할 수 있다.  검사검역기구에서 격리검역 중인 애완동물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29조** 애완동물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휴대당사자가 검사검역기구에 수출국가나 지역 관방 동물검역기구에서 제시한 검역증서와 왁친 접종증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한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기한부 반품 또는 소각처리를 결정한다.  단순히 왁친 접종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하는 작업 견인 경우 휴대당사자가 신청하면 검사검역기구에서 작업 견에게 광견병 왁친을 접종할 수 있다.  기한부 반품처리를 결정한 경우 휴대당사자는 규정기간 내에 검사검역기구에서 발급한 억류증빙을 지참하고 애완동물을 수령하는 동시에 휴대하고 출국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포기로 처리한다.  **제30조** 검역 인가증서와 기타 관련증빙을 제공하지 못하여 휴대물품이 억류된 경우 휴대당사자는 억류기간 내에 증빙을 보완하여야 하며 검사검역기구의 확인에 합격하고 실험실검역, 격리검역이나 기타 검역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한 통관시켜야 한다. 증빙을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부반품 또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  농업 유전자변이 생물을 휴대하고 입국하면서 농업 유전자 변이 생물 안전증서와 관련 인가서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휴대물품이 증서나 인가서류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한부 반품 또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 수입 농업 유전자변이 생물을 규정에 따라 표식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식을 변경한 후에 입국할 수 있다.  **제31조** 휴대물품에 하기 상황 중 하아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유해물 제거처리나 위생처리를 해야 한다.  (1) 입국하는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품에서 규정된 병충해가 발견된 상황  (2) 출입국 시체, 해골이 위생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3) 출, 입국 행리나 물품의 출발지가 전염병 유행지역이고 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전염병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  (4) 유해물 제거처리나 위생처리를 해야 할 기타 상황.  **제32조** 휴대물품에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기한부 반품이나 소각처리하고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이 방법 제22조와 제27조, 제29조, 제30조에서 열거한 상황  (2) 법률, 법규와 국가의 기타 규정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상황  (3) 기한부 반품이나 소각 처리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5장 법률적 책임**  **제33조** 동식물, 동식물 제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자에게 하기 행위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검사검역기구에 신고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행위  (2) 신고한 동식물, 동식물 제품이나 기타 검역물품이 실물과 부합하지 않는 행위  (3)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역 심사인가 수속을 하지 않은 행위  (4) 심사 인가한 규정을 집행하지 않은 행위.  전항 제(2)호에 해당한 해위가 있는 데도 검역증빙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말소한다.  **제34조** 하기 불법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징계하거나 1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검역을 거부하고 위생처리를 거부하는 행위  (2) 위생검역 증빙을 위조, 변조한 행위  (3) 신고 시에 수입금지 미생물, 인체조직, 생물제품, 혈액 및 혈액제품 또는 전염병 전염을 야기할 수 있는 동물과 제품을 은닉한 행위  (4) 검사검역기구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자의로 행리를 적, 하역한 행위  (5) 수송인원이 수송하여 입국하는 중계인원의 휴대물품을 별도로 포장하지 않거나 분리하여 적재하지 않은 행위.  **제35조** 검사검역기구의 위생처리를 받지 않은 시체나 해골을 자의로 이송하는 경우 검사검역기우에서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6조** 하기 행위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3,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검사검역기구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자의로 입국, 중계 동식물, 동식물제품이나 기타 검역물품을 운수수단에서 하역하거나 운송한 행위  (2) 검사검역기구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자의로 검사검역기구에서 지정한 격리장소에 억류 격리된 휴대물품을 이동하거나 처리한 행위  (3) 동식물 검역 봉인이나 표식을 자이로 개봉, 훼손한 행위.  **제37조** 동식물 검역증빙, 인장, 표식, 봉인을 위조, 변조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정상이 경미하여 형벌에 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에서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휴대한 폐기물이나 중고품을 검사검역기구에 신고하지 않아 검사검역기구에서 위생처리를 하지 않고 관련 증빙도 발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로 출, 입국한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동식물 검역증빙, 인장, 표식, 봉인을 매매하거나 위조, 변조한 동식물 검역증빙, 인장, 표식, 봉인을 매매하여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불법소득의 3배 이하, 최고 3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에서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분과한다.  위생검역증빙을 매매하거나 위조, 변조한 위생검역증빙을 매매하여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불법소득의 3배 이하, 최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에서 1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동식물 검역증빙, 인장, 표식, 봉인을 절도하거나 위조, 변조한 동식물 검역증빙, 인장, 표식, 봉인을 사용한 행위  (2) 위생검역증빙을 절도하거나 위조, 변조한 위생검역증빙을 사용한 행위  (3) 위조, 변조한, 국외 관방기구에서 제시한 검역 증서를 사용한 행위.  **제41조** 출입국자가 검사검기구나 그 임직원의 합법적 직무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42조** 검사검역기구의 임직원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를 위한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불법, 실직 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43조** 이 방법에서 분리 수송물품이라 함은 출, 입국자가 입국 후 또는 출국 전 6개월 내(6개월 포함)에 수행운수방식으로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당사자의 행리물품을 말한다.  **제44조** 비용을 수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5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이 방법은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7조** 이 방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2003년 11월 6일에 반포한《출입국자 휴대물품 관리방법》(국가품질검사총국 령 제56호)은 통일자로 폐지한다. |  | **出入境人员携带物检疫管理办法**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146号  《出入境人员携带物检疫管理办法》已经2012年6月27日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2年11月1日起施行。  局 长  2012年8月2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防止人类传染病及其医学媒介生物、动物传染病、寄生虫病和植物危险性病、虫、杂草以及其他有害生物经国境传入、传出，保护人体健康和农、林、牧、渔业以及环境安全，依据《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及其实施细则、《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中华人民共和国濒危野生动植物进出口管理条例》等法律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出入境人员，是指出入境的旅客（包括享有外交、领事特权与豁免权的外交代表）和交通工具的员工以及其他人员。  本办法所称携带物，是指出入境人员随身携带以及随所搭乘的车、船、飞机等交通工具托运的物品和分离运输的物品。  **第三条**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以下简称“国家质检总局”）主管全国出入境人员携带物检疫和监督管理工作。  国家质检总局设在各地的出入境检验检疫机构（以下简称“检验检疫机构”）负责所辖地区出入境人员携带物检疫和监督管理工作。  **第四条** 出入境人员携带下列物品，应当申报并接受检验检疫机构检疫：  （一）入境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  （二）出入境生物物种资源、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  （三）出境的国家重点保护的野生动植物及其产品；  （四）出入境的微生物、人体组织、生物制品、血液及血液制品等特殊物品（以下简称“特殊物品”）；  （五）出入境的尸体、骸骨等；  （六）来自疫区、被传染病污染或者可能传播传染病的出入境的行李和物品；  （七）国家质检总局规定的其他应当向检验检疫机构申报并接受检疫的携带物。  **第五条** 出入境人员禁止携带下列物品进境：  （一）动植物病原体（包括菌种、毒种等）、害虫及其他有害生物；  （二）动植物疫情流行的国家或者地区的有关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  （三）动物尸体；  （四）土壤；  （五）《中华人民共和国禁止携带、邮寄进境的动植物及其产品名录》所列各物；  （六）国家规定禁止进境的废旧物品、放射性物质以及其他禁止进境物。  **第六条** 经检验检疫机构检疫，发现携带物存在重大检疫风险的，检验检疫机构应当启动风险预警及快速反应机制。  **第二章 检疫审批**  **第七条** 携带动植物、动植物产品入境需要办理检疫审批手续的，应当事先向国家质检总局申请办理动植物检疫审批手续。  **第八条** 携带植物种子、种苗及其他繁殖材料入境，因特殊情况无法事先办理检疫审批的，应当按照有关规定申请补办。  **第九条** 因科学研究等特殊需要，携带本办法第五条第一项至第四项规定的物品入境的，应当事先向国家质检总局申请办理动植物检疫特许审批手续。  **第十条** 《中华人民共和国禁止携带、邮寄进境的动植物及其产品名录》所列各物，经国家有关行政主管部门审批许可，并具有输出国家或者地区官方机构出具的检疫证书的，可以携带入境。  **第十一条** 携带特殊物品出入境，应当事先向直属检验检疫局办理卫生检疫审批手续。  **第三章 申报与现场检疫**  **第十二条** 携带本办法第四条所列各物入境的，入境人员应当按照有关规定申报，接受检验检疫机构检疫。  **第十三条** 检验检疫机构可以在交通工具、人员出入境通道、行李提取或者托运处等现场，对出入境人员携带物进行现场检查，现场检查可以使用X光机、检疫犬以及其他方式进行。  对出入境人员可能携带本办法规定应当申报的携带物而未申报的，检验检疫机构可以进行查询并抽检其物品，必要时可以开箱（包）检查。  **第十四条** 出入境人员应当接受检查，并配合检验检疫人员工作。  享有外交、领事特权与豁免权的外国机构和人员公用或者自用的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入境，应当接受检验检疫机构检疫；检验检疫机构查验，须有外交代表或者其授权人员在场。  **第十五条** 对申报以及现场检查发现的本办法第四条所列各物，检验检疫机构应当进行现场检疫。  **第十六条** 携带植物种子、种苗及其他繁殖材料入境的，携带人应当向检验检疫机构提供《引进种子、苗木检疫审批单》或者《引进林木种子、苗木和其它繁殖材料检疫审批单》。  携带除本条第一款之外的其他应当办理检疫审批的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以及应当办理动植物检疫特许审批的禁止进境物入境的，携带人应当向检验检疫机构提供国家质检总局签发的《中华人民共和国进境动植物检疫许可证》（以下简称“检疫许可证”）和其他相关单证。  检验检疫机构按照《引进种子、苗木检疫审批单》、《引进林木种子、苗木和其他繁殖材料检疫审批单》、检疫许可证和其他相关单证的要求以及有关规定对本条第一、二款规定的动植物和动植物产品及其他检疫物实施现场检疫。  **第十七条** 携带入境的活动物仅限犬或者猫（以下称“宠物”），并且每人每次限带1只。  携带宠物入境的，携带人应当向检验检疫机构提供输出国家或者地区官方动物检疫机构出具的有效检疫证书和疫苗接种证书。宠物应当具有芯片或者其他有效身份证明。  **第十八条** 携带农业转基因生物入境的，携带人应当向检验检疫机构提供《农业转基因生物安全证书》和输出国家或者地区官方机构出具的检疫证书。列入农业转基因生物标识目录的进境转基因生物，应当按照规定进行标识，携带人还应当提供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出具的农业转基因生物标识审查认可批准文件。  **第十九条** 携带特殊物品出入境的，携带人应当向检验检疫机构提供《入/出境特殊物品审批单》并接受卫生检疫。  携带供移植用器官、骨髓干细胞出入境，因特殊原因未办理卫生检疫审批手续的，出境、入境时检验检疫机构可以先予放行，货主或者其代理人应当在放行后10个工作日内申请补办卫生检疫审批手续。  携带自用且仅限于预防或者治疗疾病用的血液制品或者生物制品出入境的，不需办理卫生检疫审批手续，但需出示医院的有关证明；允许携带量以处方或者说明书确定的一个疗程为限。  **第二十条** 携带尸体、骸骨等出入境的，携带人应当按照有关规定向检验检疫机构提供死者的死亡证明以及其他相关单证。  检验检疫机构依法对出入境尸体、骸骨等实施卫生检疫。  **第二十一条** 携带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进出境或者携带国家重点保护的野生动植物及其产品出境的，应当在《中华人民共和国濒危野生动植物进出口管理条例》规定的指定口岸进出境，携带人应当向检验检疫机构提供进出口证明书。  **第二十二条** 检验检疫机构对携带人提供的检疫许可证以及其他相关单证进行核查，核查合格的，应当在现场实施检疫。现场检疫合格且无需作进一步实验室检疫、隔离检疫或者其他检疫处理的，可以当场放行。  携带物与提交的检疫许可证或者其他相关单证不符的，作限期退回或者销毁处理。  **第二十三条** 携带物有下列情形之一的，检验检疫机构依法予以截留：  （一）需要做实验室检疫、隔离检疫的；  （二）需要作检疫处理的；  （三）需要作限期退回或者销毁处理的；  （四）应当提供检疫许可证以及其他相关单证，不能提供的；  （五）需要移交其他相关部门的。  检验检疫机构应当对依法截留的携带物出具截留凭证，截留期限不超过7天。  **第二十四条** 携带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出境，依法需要申报的，携带人应当按照规定申报并提供有关证明。  输入国家或者地区、携带人对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有检疫要求的，由携带人提出申请，检验检疫机构依法实施检疫并出具有关单证。  **第二十五条** 检验检疫机构对入境中转人员携带物实行检疫监督管理。  航空公司对运载的入境中转人员携带物应当单独打板或者分舱运载，并在入境中转人员携带物外包装上加施明显标志。检验检疫机构必要时可以在国内段实施随航监督。  **第四章 检疫处理**  **第二十六条** 截留的携带物应当在检验检疫机构指定的场所封存或者隔离。  **第二十七条** 携带物需要做实验室检疫、隔离检疫的，经检验检疫机构截留检疫合格的，携带人应当持截留凭证在规定期限内领取，逾期不领取的，作自动放弃处理；截留检疫不合格又无有效处理方法的，作限期退回或者销毁处理。  逾期不领取或者出入境人员书面声明自动放弃的携带物，由检验检疫机构按照有关规定处理。  **第二十八条** 入境宠物应当隔离检疫30天（截留期限计入在内）。  来自狂犬病发生国家或者地区的宠物，应当在检验检疫机构指定的隔离场隔离检疫30天。  来自非狂犬病发生国家或者地区的宠物，应当在检验检疫机构指定隔离场隔离7天，其余23天在检验检疫机构指定的其他场所隔离。  携带宠物属于工作犬，如导盲犬、搜救犬等，携带人提供相应专业训练证明的，可以免予隔离检疫。  检验检疫机构对隔离检疫的宠物实行监督检查。  **第二十九条** 携带宠物入境，携带人不能向检验检疫机构提供输出国家或者地区官方动物检疫机构出具的检疫证书和疫苗接种证书或者超过限额的，由检验检疫机构作限期退回或者销毁处理。  对仅不能提供疫苗接种证书的工作犬，经携带人申请，检验检疫机构可以对工作犬接种狂犬病疫苗。  作限期退回处理的，携带人应当在规定的期限内持检验检疫机构签发的截留凭证，领取并携带宠物出境；逾期不领取的，作自动放弃处理。  **第三十条** 因不能提供检疫许可证以及其他相关单证被截留的携带物，携带人应当在截留期限内补交单证，检验检疫机构对单证核查合格，无需作进一步实验室检疫、隔离检疫或者其他检疫处理的，予以放行；未能补交有效单证的，作限期退回或者销毁处理。  携带农业转基因生物入境，不能提供农业转基因生物安全证书和相关批准文件的，或者携带物与证书、批准文件不符的，作限期退回或者销毁处理。进口农业转基因生物未按照规定标识的，重新标识后方可入境。  **第三十一条** 携带物有下列情况之一的，按照有关规定实施除害处理或者卫生处理：  （一）入境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发现有规定病虫害的；  （二）出入境的尸体、骸骨不符合卫生要求的；  （三）出入境的行李和物品来自传染病疫区、被传染病污染或者可能传播传染病的；  （四）其他应当实施除害处理或者卫生处理的。  **第三十二条** 携带物有下列情况之一的，检验检疫机构按照有关规定予以限期退回或者销毁处理，法律法规另有规定的除外：  （一）有本办法第二十二条、第二十七条、第二十九条和第三十条所列情形的；  （二）法律法规及国家其他规定禁止入境的；  （三）其他应当予以限期退回或者作销毁处理的。  **第五章 法律责任**  **第三十三条** 携带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入境有下列行为之一的，由检验检疫机构处以5000元以下罚款：  （一）应当向检验检疫机构申报而未申报的；  （二）申报的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与实际不符的；  （三）未依法办理检疫审批手续的；  （四）未按照检疫审批的规定执行的。  有前款第二项所列行为，已取得检疫单证的，予以吊销。  **第三十四条** 有下列违法行为之一的，由检验检疫机构处以警告或者100元以上5000元以下罚款：  （一）拒绝接受检疫，拒不接受卫生处理的；  （二）伪造、变造卫生检疫单证的；  （三）瞒报携带禁止进口的微生物、人体组织、生物制品、血液及其制品或者其他可能引起传染病传播的动物和物品的；  （四）未经检验检疫机构许可，擅自装卸行李的；  （五）承运人对运载的入境中转人员携带物未单独打板或者分舱运载的。  **第三十五条** 未经检验检疫机构实施卫生处理，擅自移运尸体、骸骨的，由检验检疫机构处以1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  **第三十六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检验检疫机构处以3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  （一）未经检验检疫机构许可擅自将进境、过境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卸离运输工具或者运递的；  （二）未经检验检疫机构许可，擅自调离或者处理在检验检疫机构指定的隔离场所中截留隔离的携带物的；  （三）擅自开拆、损毁动植物检疫封识或者标志的。  **第三十七条** 伪造、变造动植物检疫单证、印章、标志、封识的，应当依法移送公安机关；尚不构成犯罪或者犯罪情节显著轻微依法不需要判处刑罚的，由检验检疫机构处以２万元以上５万元以下罚款。  **第三十八条** 携带废旧物品，未向检验检疫机构申报，未经检验检疫机构实施卫生处理并签发有关单证而擅自入境、出境的，由检验检疫机构处以5000元以上3万元以下罚款。  **第三十九条** 买卖动植物检疫单证、印章、标志、封识或者买卖伪造、变造的动植物检疫单证、印章、标志、封识的，有违法所得的，由检验检疫机构处以违法所得３倍以下罚款，最高不超过３万元；无违法所得的，由检验检疫机构处以1万元以下罚款。  买卖卫生检疫单证或者买卖伪造、变造的卫生检疫单证的，有违法所得的，由检验检疫机构处以违法所得3倍以下罚款，最高不超过5000元；无违法所得的，由检验检疫机构处以100元以上5000元以下罚款。  **第四十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检验检疫机构处以1000元以下罚款：  （一）盗窃动植物检疫单证、印章、标志、封识或者使用伪造、变造的动植物检疫单证、印章、标志、封识的；  （二）盗窃卫生检疫单证或者使用伪造、变造的卫生检疫单证的；  （三）使用伪造、变造的国外官方机构出具的检疫证书的。  **第四十一条** 出入境人员拒绝、阻碍检验检疫机构及其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的，依法移送有关部门处理。  **第四十二条** 检验检疫机构工作人员应当秉公执法、忠于职守，不得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违法失职的，依法追究责任。  **第六章 附 则**  **第四十三条** 本法所称分离运输的物品是指出入境人员在其入境后或者出境前6个月内（含6个月），以托运方式运进或者运出的本人行李物品。  **第四十四条** 需要收取费用的，检验检疫机构按照有关规定执行。  **第四十五条** 违反本办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六条** 本办法由国家质检总局负责解释。  **第四十七条** 本办法自2012年11月1日起施行。国家质检总局2003年11月6日发布的《出入境人员携带物检疫管理办法》（国家质检总局令第56号）同时废止。 |